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가합533483(본소), 2020가합533490(반소) 판결
[주식매매대금 및 퇴직금청구 · 부당이득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A

2. B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문대근

피고(반소원고) 1. C

2. D

3. E

4. F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석

변론 종결 2021. 5. 14.

판결 선고 2021. 7. 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피고(반소원고) C는 69,260,620원, 피고 D는 30,302,360원, 피고(반소원고) E, 피고 F(반소원고)은 각 17,311,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1.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B에게, 피고(반소원고) C는 33,959,380원, 피고(반소원고) D는 14,857,640원, 피고(반소원고) E, 피고(반소원고) F은 각 8,488,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1.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8. 8. 1.부터로 기재한 것 외에는 주문 제1, 2항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C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는 340,617,229원, 원고 B은 167,009,043원,

나. 피고 D에게, 원고 A는 149,024,162원, 원고 B은 73,068,479원,

다. 피고 E에게, 원고 A는 85,137,807원, 원고 B은 41,744,170원,

라. 피고 F에게, 원고 A는 85,137,807원, 원고 B은 41,744,1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주식회사 G(주식회사 H에서 2017. 3. 4. 그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였던 사람들이다. 원고 B은 2013. 11. 12.부터 2014. 2. 4.까지, 원고 A는 2014. 10. 8.부터 2016. 7.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A는 원고 B의 배우자이다.

2) 피고 C는 피고 D의 배우자이고, 피고 E, F은 피고 C와 피고 D의 자녀들이다.

나. 주식 양도·양수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6. 6.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08,500주(= 원고 A 보유주식 72,800주 + 원고 B 보유주식 35,700주)를 합계 1,409,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매수인별 구체적인 매수수량, 매수비율 및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C	56,000주	51.61%
2	피고 D	24,500주	22.58%
3	피고 E	14,000주	12.9%
4	피고 F	14,000주	12.9%
합계	108,500주		

제3조(주식의 양도 대금)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108,500주를 1주당 12,987원으로 계산하여 전체 인수금액을 일금일십사억구백만원정(₩1,409,000,000)으로 정한다.

제4조(대금의 지급 및 방법)

1. 본 계약의 계약금은 금이억원정(₩200,000,000)으로 하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계약일에 일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고 나머지 일금일억오천만원(₩150,000,000)을 2016. 6. 8.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중도금 금삼억원정(₩300,000,000)을 2016. 6. 30.까지 지급키로 하며,

잔금 금구억구백만원(₩909,000,000) 중에서 일금칠억구백만원(₩709,000,000)을 2016. 7. 31.에 지급하기로 하고, 유보금 금이억원(₩200,000,000)은 2016. 12. 29.까지 지급기로 한다.

3. 원고들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회사 관련 자산 및 서류 일체를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피고들은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9조(특약사항)

1. 경영권의 원활한 양도, 양수를 위하여 본 계약 제4조에 의한 원고들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 이외의 주식은 전량 중도금 지급일 전까지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 중 잔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C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6. 7. 27. 피고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하고, 위 물품공급계약 별첨1 표 '매입처'란 기재 각 매입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 하며,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같은 표 '미수금'란 기재 각 외상매출금 채권 합계 577,475,000원을 통틀어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제2조(계약 내용)

1. 원고들은 (주)H(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재무제표상 나타난 미수금 ₩577,475,000원(별첨1)으로 매입처별로 회사에서 필요한 설비를 구매하고 대금은 외상매출금으로 상계처리토록 한다. 다만 폐업으로 발생한 미수금(별첨1)은 대손상각 처리기로 한다.

2.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 설비 구매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상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과 비용은 원고들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설비구매) 원고들은 세무회계 처리상 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한 설비를 구매하여야 하며 원고들은 피고 C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이행보증등)

1. 본 계약서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 B 외 1인의 주식 양도, 양수에 따른 유보금 200,000,000원을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완료할 때까지 지급을 보류기로 한다.
2. 원고들은 미수금의 상계처리를 위한 부가세 일금 37,000,000원을 피고 C에게 보관후 세금계산서 수령 후 해당 금액의 부가세를 처리기로 한다.
3. 원고들은 I(별첨1)으로부터 공사이행대금(₩338,800,000)에 대하여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 C에게 제출하여 주기로 한다.
4. 제4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이행보증서 발급 및 부가세가 입금되는 경우 본 계약서 효력이 발생한다.

[별첨1]

(주)J	35,660,000	폐업
(주)K	2,750,000	
L(주)	47,000,000	폐업
I	310,365,000	
(주)M	25,300,000	
(주)N	64,000,000	
(주)O	53,020,000	
(사)P	19,690,000	
Q(주)	19,690,000	폐업
합계	577,475,000	

라. 원고 B, 피고 C, R의 확약서 작성

원고 B, 피고 C 및 R(2006. 3. 22.부터 2013. 11. 12.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한 사람이다)은 2018. 7.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확약서

(주)S의 (주)H를 M&A한 뒤 미수금 정리건에(매출) 대하여 일부 정리한 것 외에 남은 잔액건은 2019년 말까지 유예기로 한다. 현재 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유예함을 합의하며 그로 인하여 M&A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와 당사자인 원고 B도 2019. 12. 말까지 유예하는 것을 공지해 줬으며 이에 확인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하기로 한다. 이는 미수금 정리에 대한 약속서이다.

※ 전체 미수금 금액 중 70% 이상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상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들의 대리인인 T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임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매출채권 액수를 자산평가의 기초로 삼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매출채권을 장부상 정리하는 데 협조하여 달라는 피고들의 요청을 받았고, 2016. 7. 27. 피고들과 사이에 '①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회사에 설비를 공급한 것처럼 형식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그 설비대금과 이 사건 매출채권을 장부상 상계 처리하고, 설비는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감가상각 처리하는 방법 및 ② 이미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경우 대손상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2년 이내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정리하되, 그때까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200,000,000원의 잔금지급을 보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는 의무는 이 사건 매출채권을 장부상 정리하는 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줄 의무일뿐, 실제 설비를 구매하여 이 사건 회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R을 통하여 이 사건 거래처를 접촉하여 2018. 7. 말까지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위 거래처들에 부과될 부가세 상당액을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부가세 명목의 돈 37,000,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2018. 7.경에 이르자 재정상황이 어려워 부가세를 선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R은 2018. 7. 24. 피고들과 사이에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2019. 12.말까지 유예하는 대신, 당초 매출채권액 중 70%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잔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8. 7.말경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설령 이 사건 확약을 통하여 잔금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유예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매출채권의 70% 상당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주었거나 또는 거래처의 폐업으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및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잔금지급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확약에서 정한 2019. 12.말경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다) 선택적으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채무의 이행기 약정도 무효이다. 다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채권임에도 마치 진정한 채권인 것처럼 피고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위 매출채권이 진정한 것임을 기초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평가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실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이 분식회계로 계상된 허위채권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의 처리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7. 27.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이 2년 이내에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허위 매출채권액과 같은 금액의 설비를 구입하여 이 사건 회사에 인도하여 주고, 이 사건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 사건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정리하며, 원고들이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잔금지급채무의 이행기를 보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선이행의무인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설비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잔금지급채무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이 사건 확약의 해석상 원고들이 그 의무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는 잔금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가) 처분문서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9, 10, 26, 28 내지 30, 32,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의무는 이 사건 거래처 중 폐업하지 않은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줄 의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 설비를 구입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매출채권 상당액이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평가되어 주식양수도대금에 반영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매출채권 상당액이 이 사건 회사의 자산에 포함되어 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T가 운영하는 기업인수합병 등의 중개업, 기업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U 주식회사의 중개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T를 통하여 주식양도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2016. 6. 1. T의 이메일로 2016. 5. 3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자산현황을 정리하여 송부하였는데, 그 자산현황에는 외상매출금 채권액이 '407,791,2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외상매출금의 상세내역에 이 사건 매출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는 별첨 문서로 이 사건 회사의 2016. 5. 31. 기준 자산현황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별첨 문서에도 외상매출금 채권액이 '407,791,2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 양수도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회사의 자산내역에 이 사건 매출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중개인 T로서는 원고들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회사의 자산현황에 관한 자료를 인수희망자인 피고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피고들 역시 위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이 사건 매출채권이 이 사건 회사의 자산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처분문서는 그 제목이 '물품공급이행계약서'라고 되어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상당의 설비를 구입하여 공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물품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그 물품대금을 이 사건 매출채권과 상계 처리한다거나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경우 대손상각 처리한다는 규정 등 전형적인 공급계약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 회사의 자산가치가 이 사건 매출채권 상당액만큼 과다 평가됨으로써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상당액도 배상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2조 제1항 단서와 같이 '다만, 폐업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대손상각 처리기로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3) 나아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제3조에서 '세무회계 처리상 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한 설비를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이 공급하여야 할 설비의 구체적 종류나 사양, 수량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원고들과 피고들이 어떠한 종류의 설비를 구매하여 공급할 것인지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점 역시 위 물품공급계약이 통상적인 공급계약과 달리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6. 7. 20. 이 사건 거래처 중 I2) 에 계약금액을 338,800,000원(부가세 33,88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전기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전기공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실제 위와 같은 전기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이 사건 회사는 2016. 7.경 원고들 내지 R을 통하여 I에 부가세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I으로부터 위 도급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5) 원고 B, 피고 C 및 R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기(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가 도과할 무렵인 2018. 7. 24. 이 사건 확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확약서에는 '미수금 정리 건에 대하여 일부 정리한 것 외에 남은 잔액 건은 2019년 말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까지 원고들은 I으로부터 형식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였을 뿐, 실제 설비를 구입하여 인도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의무가 설비공급의무라고 본다면, 이 사건 확약에 '일부 정리된 미수금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나아가 이 사건 확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우므로 (미수금 잔액 건을) 유예함을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만일 원고들의 의무가 단순한 설비공급의무라면, 이 사건 회사의 재정을 이유로 그 이행기를 연기한다는 확약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처에 대납해주시기로 한 부가세 중 37,000,000원을 우선 피고들에게 지급하여 보관하게 하였고, 나머지 부가세는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이 2018. 7.경까지 부가세 상당액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피고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연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확약 내용은 원고들 주장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및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원고들의 의무이행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9호증의 3, 제16,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및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확약서에는 '남은 (미수금) 잔액건은 2019년 말까지 유예기로 한다. 전체 미수금 금액 중 70% 이상만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채권을 장부상 정리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발급받아 주기로 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2019. 12.말까지로 유예하되, 전체 미수금 금액 중 70% 이상의 정리가 이루어지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의무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합의로 해석된다.

나) 그런데 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당시 이 사건 거래처 가운데 3개(주식회사 J, L 주식회사, Q 주식회사)는 이미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상태로, 원고들과 피고 C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102,350,000원(= 35,660,000원 + 47,000,000원 + 19,690,000원)을 대손상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하였고, ② 2016. 7.경 I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I에 대한 매출채권 310,365,000원을 장부상 상계 처리하였으며, ③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후 2019. 5.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K, 주식회사 N이 폐업함으로써 위 각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66,750,000원(= 2,750,000원 + 64,000,000원)의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채권 합계 577,475,000원의 70% 상당인 404,232,500원을 넘는 총 479,465,000원(= 102,350,000원 + 310,365,000원 + 66,750,000원)의 매출채권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상계 내지 대손상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정리되었고, 이 사건 매출채권 가운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당시 이미 폐업한 3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채권 합계 475,125,000원(= 577,475,000원 - 102,350,00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그 70% 상당인 332,587,500원을 넘는 총 377,115,000원(= 310,365,000원 + 66,750,000원)의 매출채권이 정리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및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들 잔금지급채무의 이행기 도래 나아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잔금지급채무의 이행기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잔금지급채무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8. 7.말경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으로 이 사건 매출채권을 정리하는 것을 잔금지급채무의 정지조건 내지 이행기로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위 물품공급계약에서 잔금지급채무의 이행기를 그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8. 7.경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출채권을 정리할 때까지

피고들의 잔금지급을 보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확약 체결 무렵부터 피고들에게 잔금지급을 요구하였으며, 2019. 5. 30. 이 사건 매출채권 중 적어도 70% 상당의 채권이 장부상 정리됨으로써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및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원고들의 의무이행이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의무이행을 완료한 2019. 5. 30. 피고들이 부담하는 잔금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잔금지급채무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라. 소결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200,000,000원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잔금을 원고들의 매도비율(원고 A 67.1%, 원고 B 32.9%) 및 피고들의 매수비율(피고 C 51.61%, 피고 D 22.58%, 피고 E, F 각 12.9%)별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1	원고 A	피고 C	69,260,620	$200,000,000\text{원} \times 67.1\% \times 51.61\%$
2	피고 D	30,302,360	$200,000,000\text{원} \times 67.1\% \times 22.58\%$	
3	피고 E	17,311,800	$200,000,000\text{원} \times 67.1\% \times 12.9\%$	
4	피고 F	17,311,800	$200,000,000\text{원} \times 67.1\% \times 12.9\%$	
5	원고 B	피고 C	33,959,380	$200,000,000\text{원} \times 32.9\% \times 51.61\%$
6	피고 D	14,857,640	$200,000,000\text{원} \times 32.9\% \times 22.58\%$	
7	피고 E	8,488,200	$200,000,000\text{원} \times 32.9\% \times 12.9\%$	
8	피고 F	8,488,200	$200,000,000\text{원} \times 32.9\% \times 12.9\%$	
합계	200,000,000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날인 2020. 5. 3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8.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20. 5. 31.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1) 이 사건 매출채권 관련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약정금채권 원고들은 이 사건 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채권임에도 마치 위 채권이 진정한 채권인 것처럼 피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매출채권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위 매출채권 상당액인 557,47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매출채권을 회수해주기 위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위 매출채권액 상당의 설비를 구입하여 이를 인도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매출채권 상당액 557,47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지 약정금으로 577,47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특허권 관련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모터 전류 감시를 이용한 원격 제어장치'에 관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1/2 지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12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특허권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특허권 1/2 지분의 가액 상당인 60,000,000원의 손해 및 ② 한국농어촌공사에 2016년 ~ 2018년도 특허사용료로 합계 36,813,205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③ 2019년부터 위 특허권의 만료일인 2033. 12. 18.까지 향후 15년간 특허사용료로 184,066,025원(= 3년간 특허사용료 36,813,205원 × 5년)을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280,879,230원(= 60,000,000원 + 36,813,205원 + 184,066,02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자사주 매입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9조 제1항 나.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원고들 이외의 주주들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전량 자사주로 매입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약정에 반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52,500,000원을 대출받아 W 보유주식 10,500주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사주를 매입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대출금 상당액 52,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자사주 매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9조 제1항 나.호에 따라 중도금 지급일 전까지 원고들 이외의 주주들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을 전량 자사주로 매입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X 보유주식 21,000주를 자사주로 매입하여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자사주 매입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21,000주의 가액 상당인 272,727,000원(= 1주당 매매대금 12,987원 × 21,000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들별 채무액 계산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내지 약정금으로 합계 1,183,581,230원(= 577,475,000원 + 280,879,230원 + 52,500,000원 + 272,72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위 손해배상채권 내지 약정금채권을 원고들의 잔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들의 채권액은 983,581,230원(= 1,183,581,230원 - 200,000,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을 원고들의 매도비율 및 피고들의 매수비율별로 계산하면 반소 청구취지 금액과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매출채권 관련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약정금채권의 성립 여부 피고들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매출채권 상당액이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평가되어 그 주식양수도대금 산정에 반영되었다거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설비를 구입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매출채권 상당액이 주식양수도대금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설비공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허권과 관련한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 갑 제19 내지 22, 3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의 양도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반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협상 과정에서 중개인 T의 이메일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였는데, 당시 전달된 자료에는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권리공유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중개인 T가 원고들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회사의 자산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인수희망자인 피고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도 당시 위 문건을 확인해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이후 이 사건 회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2016년 ~ 2018년도 특허사용료를 매년 지급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8.경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을 양도한 뒤 2015년 ~ 2018년도에 매년 한국농어촌공사에만 특허제품을 납품하고, 위 특허제품으로 인한 매출액의 3% 상당을 특허사용료로 지급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신이 이 사건 특허권을 공유하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특허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고, 특허제품의 주요고객이 한국농어촌공사였으므로, 특허제품의 매출처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위 특허권을 공유한다는 사정을 피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자사주 매입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및 자사주 매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 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참조).

나) 피고들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원고들 이외의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하여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하에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피고들 주장과 같은 자사주 매입의무가 인정되는지 본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9조 제1항 나.호에 따르면, '원고들은 원고들 이외의 주식은 전량 중도금 지급일 전까지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주식양도계약 제9조 제1항 나.호는, 같은 조 제1항 가.호에서 '피고들이 지정한 3인을 회사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등재하여야 한다' 내지 '원고들은 모든 업무를 파견자와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자사주 취득 재원을 반드시 이익잉여금으로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만일 피고들 주장처럼 원고들이 자사주 매입에 관하여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자사주로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주식의 취득 재원이나 단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 140,000주의 77.5%인 108,500주를 취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을 반드시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피고들 주장과 같은 자사주 매입의무를 법률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반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성원

판사배온실

판사구현정

- 1) 매도주식 총 108,500주 가운데 원고 A 보유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매도비율'이라 한다)은 약 67.1%(= 72,800주 / 108,500주 × 100), 원고 B의 매도비율은 약 32.9%(= 35,700주 / 108,500주 × 100)이다.
- 2) 그 상호가 '주식회사 V'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T'이라 한다.